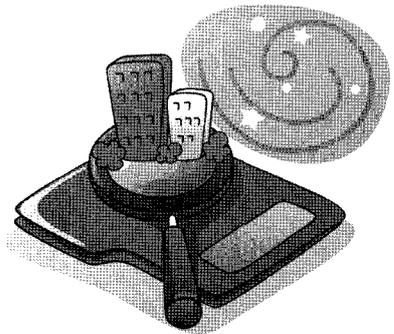


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협회, 업종별 단체 및 주요 수출업체와 합동으로 「기술보호무역 선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지식경제부가 발표하였다.

민간 대응체제로서는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의 연구전략기관으로 정하여 상시 국제동향분석 및 대응전략마련 등의 정책수립지원기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규제의 기술적 분석 및 기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해외의 기술 보호무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보의 입수·분석·대응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파악한다. 외국의 기술규제정보를 시행이전 준비단계부터 신속히 입수하기 위해 재외 상무관, KOTRA 등이 해외진출기업들과 공조하는 선제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무역협회 및 업종별 단체는 정부와 합동으로 입수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간 협상 및 협력채널 등을 통하여 시험·검사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및 기술규제대응을 위한 R&D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책회의에서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규제의 총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으로 기술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보호무역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09년도에 WTO를 통해 보고된 국가별 총 기술규제 건수가 '08년 대비 19% 이상 증가한 1,491건이다. 개도국의 TBT 통보문 비중이 60%('08년)에서 82%('09년)로 상승했다.

기술보호무역주의란 안전·보건·환경 등을 명분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요 수출업체는 기술규제가 주요한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 및 분석, 외국과의 협의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활동을 강화해줄 것과 함께,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과의 연계 등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요청하였다.

한편, 화학시험연구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적합성 평가기관은 대부분의 해외 기술규제가 궁극적으로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인증취득으로 귀결되는 바, 국내 시험기관들도 신인도와 경쟁력을 확대하여 국내업체가 수출에 필요한 시험평가와 인증을 획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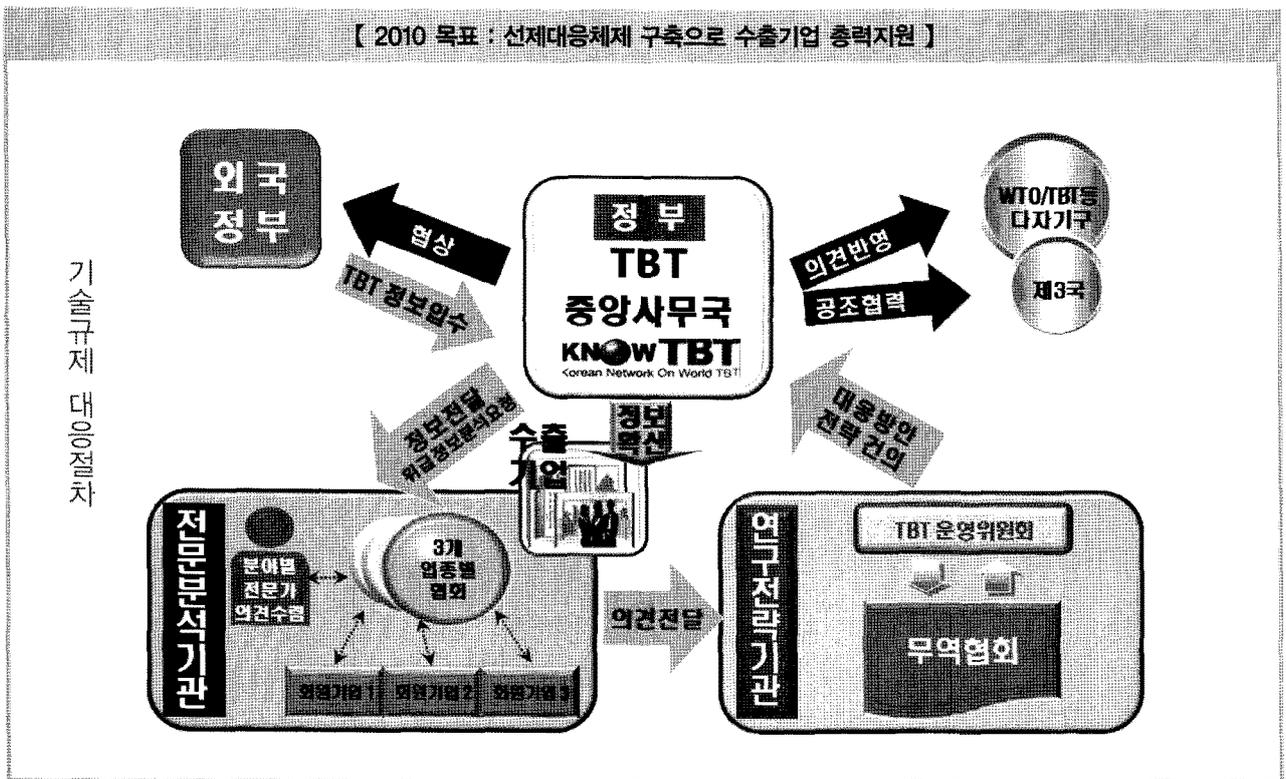
지정부 측은 특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게는 기술규제가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지정부의 R&D사업에 “무역기술장벽 극복과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술규제 관련 국제표준의 정비를 해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 진출기반의 사전정비를 적극 도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기술 보호무역주의 대책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기술규제 대응 선제 대응체제의 구축이다.

산업계에 의한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체제 구축이다.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의 연구전략기관으로 지정하고, 상시 국제동향분석 및 대응전략마련 등의 정책수립지원기관으로 활용한다.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규제의 기술적 분석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한다.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부품/소재, 화학/환경의 3개 분야 업종별 단체를 활



용한다.

TBT 중앙사무국은 정보입수 및 대응방안 시행을 총괄한다. 정부(TBT중앙사무국)는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기술보호무역 타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전력 추진(외교부, 농수산부, 보건복지부)한다. “TBT 대응 우수업무관행” 등 모범대응사례의 개발 및 보급이다.

둘째, 기술표준 외교활동 강화이다. 수출전략지역 중심의 적극적 양자협력활동 추진이다.

외국 기술규제대응에 있어서 규제의 합리성·국제규범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대응논리를 정립한 후 양자협력 활동의 전개를 한다. 교역국별 국제표준개발협력, 표준인프라지원의 차별적 활용 및 국제공조 활동을 통한 협력기반의 효과적·적극적 활용이다.

FTA 상대국 기술규제해소를 위한 FTA협상·이행 활동 전개이다. FTA 상대국 기술규제 개발과정에서 선제 대응하고, TBT 협의채널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사항의 문제제기 및 신속조치이다.

다자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WTO/TBT위원회 대응활동 강화이다. WTO/TBT 위원회 활동의 내실화를 통한 국내 수출업체 지원과 우리나라로 제기되는 특정무역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셋째, 수출 중소 중견기업 지원대책 추진이다. 大·中小기업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TBT 대응유도이다.

수출 대기업과 연계된 부품소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대기업이 1차적 대응전략을 지원하도록 협력체계 구축하고, 기업-정부 간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의 확대를 통해 기업애로 청취 확대 TBT대응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모색이다.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한 TBT대응 지원정책 개발 다양화와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숲과정을 분석하여 컨설팅서비스를 추진함과 함께 TBT극복을 위한 역

량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기존의 중소기업청 지원사업과 기술규제극복과의 연계이다. 중소기업청「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규제극복방안의 홍보 및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과 중기청「수출도우미 활용지원사업」에 TBT 컨설팅 추가이다. 해외진출기업 설명회 등 최신정보의 신속전파이다. 파급영향이 큰 TBT를 대상으로 국·내외 설명회 개최를 한다.

넷째, TBT 대응 선도국가 지향사업을 추진한다.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R&D등 인프라지원활동 전개이다. 장기적으로 특정 기술규제는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는 점을 감안, 관련 R&D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모색한다.

기술규제와 연계되는 국제기술기준제정과정에 전략적 참여이다. 선진국들이 ISO, IEC 등 국제표준을 기술기준으로 활용하는 점에 착안, 기술규제관련 Rule making을 선도함으로써 기술장벽에 능동적 대응과 FTA상대국의 기술규제, 표준 제·개정과정 참여에 대한 활동지원한다.

TBT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다. 국내 시험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시험·인증기관이 기술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기술·무역·법률분야에 대한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통상 및 기술분야 TBT 전문인력양성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체질 강화 활동을 전개한다. 시험인증기관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지원이다.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재편하여 제품개발연구에서 고난도 시험인증까지 일괄지원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한다. 신규 장비구축 및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 제고 기반을 확대하고 주요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경영진에 대한 TBT 인식제고 활동을 전개한다. 우수사례의 전파, 집단 대응의 장점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교재개발 및 강사인력확보 추진한다. 단체별 조찬세미나 등에 TBT 관련 발표를 포함시켜 TBT 저변확대를 촉진한다.

기술규제 극복사례의 체계화 및 활용을 통해 기업 스스로의 대응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대응사례의 기업간 공유를 위한 공조체제 구축한다.

국내외 우수관행을 매뉴얼화하여 개별기업의 일괄 대응 체제가 가능하도록 종합매뉴얼 개발 및 보급하

고, 전경련·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국내 기술규제대응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한다.

선진국 대응시스템 벤치마킹 및 기술규제 전문인력 확산 보급한다. 중국, 일본, EU 등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기술보호무역 대응활동을 하는 국가의 매뉴얼·대응시스템 등을 분석한다.

국가간 규제당사자 교류협력, 전문가 파견, 교육프로그램 개발활동추진 및 배출을 통해 전문 인력양성 및 기업진출 확대한다.

연월	년월	국가	기술규제 내용	대응 결과	대응유형		'08년 수출액
					양자	다자	
1	'08.3	노르웨이	소비자제품의 18개 유해물질 사용금지	•WTO('08.3, '08.7)에서 문제 제기하여 DEHP 등 8종 제외		○	83억불
2	'08.6	인도네시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SNI 강제인증	•WTO('08.7)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철회		○	1.23억불
3	'08.7	사우디	모든 수입제품에 적합성인증서 첨부	•MoU 체결('08.6), 국내 기관을 적합성 인증기관으로 지정('08.12)	○		34.7억불
4	'08.7	중국	13개 정보안전제품에 대한 강제인증(ISCCC)	•미국·일본과 공조, WTO('09.3)에서 개선 요청, 시행일을 1년 연기('09.5)	○	○	0.1억불 (8억불 확대가능)
5	'08.11	미국	12세이하 어린이용품 안전 적합성인증을 의무화	•KOLAS 시험기관 지정('08.11)	○		(장난감경우) 0.16억불의 30% 감소
6	'08.12	인도	17개 철강재/철강제품에 대한 BIS 강제인증	•일본, EU와 공조하여 대응, 1년 시행연기('09.2)		○	9.5억불
7	'08.12	EU	타이어 소음제한 인증마크 부착	•한-EU 공동위 논의('09.2) 및 WTO('09.3)에서 시행 연기요청, 별도 시험성적서 첨부 후 판매허용	○	○	8.4억불 (재고 1억불)
8	'08.12	EU	REACH 사전등록 마감 및 니켈규제 추진	•WTO('08.11, '09.3)에서 시행 연기 및 보완요청: 별도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추진은 계속		○	연간 3,300억원 비용 추가 부담
9	'09.2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에 대한 SNI 강제인증	•인증 시료수를 축소 •양국간의 MOU논의 합의	○	○	3억불
10	'09.2	에콰도르	공산품(타이어, 철강,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적합성인증서 첨부	•미국과 공조하여 대응, 규제 철회('09.5)		○	6.26억불
11	'09.3	태국	공산품(타이어,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적합성인증 기준변경	•인증 시료수를 축소 •양국간의 MOU논의 합의: KS인증 경험공유 추진	○	○	57.8억불
12	'09.8	말연	철강제품에 대한 MS 강제인증	•시행일을 2개월 연기 시료수 및 심사일수 축소 •양국간의 MOU 논의 합의	○	○	7.4억불